

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30 일
신청인	①기 관 명			
	②성명(대표자)		③주민등록번호	
	④소 재 지	(전화 :)		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환경부장관 귀하				
구비서류				수수료
1. 전문인력 내역 1부				없 음
2. 수렵강습기관 시설 내역 1부				

(뒤 쪽)

※ 작성요령

1. ④소재지란에는 수렵강습기관 시설이 있는 곳을 기재합니다.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